평택-시흥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

(2차)변경실시협약

2015. 4. 30

국 토 교 통 부

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식회사

국토교통부장관(이하 "주무관청" 이라 한다)과 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식회사(이하 "사업시행자" 라 한다)는 평택-시흥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1차 자금재조달(자기자본비율 인하) 및 2차 자금재조달(선순위차입금 금리인하)과 관련하여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체결한 2007년 7월 18일자 '평택시흥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' (이하 "최초 실시협약" 이라 한다) 과 2009년 12월 30일 체결한 '평택시흥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실시협약' (이하 "1차 변경실시협약", 1차 변경실시협약에 의하여 변경된 최초 실시협약을 이하 "실시협약" 이라 한다)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기로 하여, 다음과 같이 2015년 4월 30일에 이 (2차)변경실시협약(이하 "이 변경실시협약" 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제1조 정의

이 변경실시협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이 변경실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, 실시협약에서 정의된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. 실시협약에서 "국토해양부" 로 기재된 사항은 모두 "국토교통부" 로 변경된다.

제2조 총사업비 및 총민간사업비

실시협약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당 초	변 경
총사업비는 <별표3>(총사업비)와 같이 2004년 6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금 6,399.38억원이며, 이는 총민간사업비와 같으며 사업시행자가 조달하는 보상비 433억원을 포함한 금액이다. 총사업비는 본 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할 수 없다.	총사업비는 <별표3>(총사업비)와 같이 2004년 6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금 6,334.41억원이며, 이는 총민간사업비와 같으며 사업시행자가 조달하는 보상비 331.49억원을 포함한 금액이다. 총사업비는 본 협약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변경할 수 없다.

제3조 공사비

실시협약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당 초	변 경
공사비는 <별표3>(총사업비)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04년 6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금 5,139.03억원으로 한다.	공사비는 <별표3>(총사업비)에 명시된 바와 같이 2004년 6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금 5,174.22억원으로 한다.

제4조 운영비용

실시협약 제4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당 초	변 경
본 사업의 총 운영비용은 2004년 6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금 3,043.78억원(법인세 제외)이며, 연도별 부문별 운영비용 내역은 <별표11>(운영비용)과 같다. 고속도로통행카드 할인수수료, ETCS운영에 따른 정산수수료 등 통행료 징수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 제수수료는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	본 사업의 총 운영비용은 2004년 6월 30일 불변가격 기준 금 3,072.10억원(법인세 제외)이며, 연도별 부문별 운영비용 내역은 <별표11>(운영비용)과 같다. 고속도로통행카드 할인수수료, ETCS운영에 따른 정산수수료 등 통행료 징수와 관련하여 발생하게 되는 제수수료는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.

제5조 법인세법 변경시 처리

실시협약 제42조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당 초	변 경
(신설)	협약당사자는 사업기간 중 법인세법의 개정에 따라 법인세율 등의 증감이 있는 경우, 그 증감분에 대하여 사용료,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또는 보조금의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6조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

실시협약 제46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, 제8항을 신설한다.

당 초	변 경
⑤주무관청은 제4항의 조사·확인 결과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운영실적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, 재조사하여 부속시설의 실제 운영순이익을 확정한다.	⑤주무관청은 제4항의 조사·확인 결과 사업시행자가 보고한 운영실적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, 재조사하여 부속시설의 실제 운영순이익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확정한다.
(신설)	⑧사업시행자는 제7항에 따라 배분된 주무관청의 초과이익금을 별도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예치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배분된 초과이익금을 사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시점부터 사업시행자의 환입 또는 상계시점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 부담하는 채무의 선순위변동금리대출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정산하기로 한다.

제7조 사업수익률

실시협약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당 초	변 경
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세전 실질수익률로서 6.11%(세후 5.29%)로 하고, 본 협약 종료시점까지 세전 실질수익률은 변경되지 아니한다.	본 사업의 사업수익률은 세전 실질수익률로서 4.98%(세후 4.48%)로 하고, 본 협약 종료시점까지 세전 실질수익률은 변경되지 아니한다. 다만, 제42조의 1(법인세법 변경시 처리)에 따른 조정에 따라 세전 실질수익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8조 통행료의 결정 및 조정

실시협약 제50조 제4항을 신설하고, 당초 제4항을 제5항으로 변경한다.

당 초	변 경
(신설)	④제3항에도 불구하고, 2015년 이후 2033년까지의 연도별 통행료는 3년 단위로 조정하며, 직전 통행료 대비 통행료 상승률은 6.12%를 초과할 수 없다. 실시협약 상 추정 물가지수변동률(연 3.00%)이 실제 물가지수변동률과 차이가 있음으로 인하여 실시협약 상의 세전실질수익률과 실제로 산정한 세전실질수익률에 차이가 있을 경우 2033년 이후 최초의 통행료 조정 시 반영하여 정산하기로 하며, 세부적인 정산방안은 별표12-3(자금재조달 공유이익 정산)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.
④불가항력 사유, 주무관청의 귀책사유, 기타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하고,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부담분 일부를 통행료를 조정하여 해소하기로 협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, 기타 직전년도 실제 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 통행료수입에 미달하고 동 미달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행료의 조정을 통해 보전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통행료를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협약당사자가 통행료의 적절한 조정에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,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한 전문기관에 통행료 수준조정의 타당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그 의뢰결과에 따라야 한다.	⑤불가항력 사유, 주무관청의 귀책사유, 기타 본 협약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비용이나 손실이 발생하고,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부담분 일부를 통행료를 조정하여 해소하기로 협약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, 기타 직전년도 실제 통행료수입이 보장기준 통행료수입에 미달하고 동 미달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행료의 조정을 통해 보전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통행료를 추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. 이 경우에 협약당사자가 통행료의 적절한 조정에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, 협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정한 전문기관에 통행료 수준조정의 타당성 평가를 의뢰할 수 있으며, 이 경우에는 그 의뢰결과에 따라야 한다.

제9조 보상업무

실시협약 제5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당 초	변 경
사업부지에 대한 보상비 중 433억원(2004년 6월30일 불변가격 기준)에 대해서는 총사업비(총민간사업비)에 포함하며,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정부의 보상비 재원에 충당하기로 한다.	사업부지에 대한 보상비 중 331.49억원(2004년 6월30일 불변가격 기준)에 대해서는 총사업비(총민간사업비)에 포함하며,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조달하여 정부의 보상비 재원에 충당하기로 한다.

제10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

실시협약 제76조 제1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.

당 초	변 경
①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기로 하며, 협약 당사자간 이익 공유의 비율은 50:50으로 한다.	①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기로 하며, 협약 당사자간 이익 공유의 비율은 자금재조달 발생시점의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.
⑤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처리에 대해서는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및 제3자 공고에서 규정한 자금재조달 관련 세부지침 및 조건에 따른다.	⑤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처리에 대해서는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른다.

제11조 부록의 변경

(1) 실시협약 별표1, 별표2, 별표3, 별표4, 별표6, 별표7, 별표8, 별표9, 별표10, 별표11, 별표12, 별표12-1은 이 변경실시협약에 첨부된 별표1, 별표2, 별표3, 별표4, 별표5, 별표6, 별표7, 별표8, 별표9, 별표10, 별표11, 별표11-1과 같이 변경한다.

(2) 실시협약 별표12-2를 이 변경실시협약 별표11-2와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 실시협약과의 관계

실시협약의 규정은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배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이 변경실시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그 효력을 상실하며,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대로 변경된다. 다만, 이 변경실시협약 체결일 현재 이 변경실시협약의 내용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실시협약에 따라 발생한 본 협약당사자간의 권리·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
제13조 변경실시협약의 효력발생

이 변경실시협약은 이 변경실시협약 체결일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.

(서명란은 다음 장에)

이 변경실시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 및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적법한 자로 하여금 아래 기재 일자에 이 변경실시협약에 각자 서명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

2015년 4월 30일

대 한 민 국

국토교통부장관 유 일 호

제이서해안고속도로주식회사

대 표 이 사 류 영 창